

## 약관 변경 수시 공시

1. 대상투자신탁 : BEST CHOICE 파생상품투자신탁 SH-1호

2. 변경 내용 : 수탁회사 보수율 인하 (0.04% → 0.02%)

3. 변경내용 대비표

현 행	변 경
<p><b>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</b></p> 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까지  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8.0 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0  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</p> <p>2. 설정일로부터 6 개월 경과 후  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 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0  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</p>	<p><b>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</b></p> 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까지  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8.0 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0  <b>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</b></p> <p>2. 설정일로부터 6 개월 경과 후  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0.1 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0  <b>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</b></p>

4. 변경 시행일 : 2005년 7월 28일

조흥투자신탁운용(주)